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02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김용만·이광재·윤종균
한준호·박균택·박 정
이개호·이재관·임미애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조성·”을 “조성하여”로, “정원”을 “정원 또는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정원의 조성”을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으로, “, 제6조의3, 제7조”를 “, 제7조”로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지정 등”을 “조성 및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역별료”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료 1개소 이상의」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를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으로,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을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으로,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를 “지방정원의 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을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로,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을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를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정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관리”를 “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은 국가가 운영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과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정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의 운영·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9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국가정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이 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정원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원조성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원조성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생 략)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u>조성·운영</u> 하는 <u>정원</u> 2. ~ 6. (생 략) ③ (생 략)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u>조성하여</u> ----- ----- <u>정원 또는 제18조의 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원</u> 2. ~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u>정원의 조성 등</u>) 정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u>국가 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 계획의 승인</u>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제외한다), <u>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u>	제18조의2(<u>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u>) ----- -----, <u>정원조성계획의 승인</u> ----- ----- -----, <u>제7조</u> ----- -----.
제18조의3(국가정원의 <u>지정</u>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	제18조의3(국가정원의 <u>조성 및 지정</u>) ① ----- ----- -----

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1개소 이상의-----균형 있게 조성 또는 지정되도록 하여야-----.

②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기준에 따라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정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다만, 제18조의2에 따라 정원조성에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 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 · 관리)
<신 설>

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면적--시설의 종류, 구성요소-----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국가정원의 조성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 · 관리 및 지원) ① 국가가 조성한 국가정원은 국가가 운영한다. 다만,

<신 설>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림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의 운영과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구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 ④ (생략)

④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정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의 운영·관

